

예산총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1,449,610	15,043,488
일반회계	432,934,536	12,988,036
특별회계	68,515,074	2,055,452
공기업특별회계	33,290,236	998,707
상수도사업	10,896,042	326,881
하수도사업	22,394,194	671,826
기타특별회계	35,224,838	1,056,745
의료급여기금	1,694,150	50,825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248,010	7,44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34,800	7,044
농공지구조성	5,357,173	160,715
중소기업육성자금	5,285,292	158,55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75,322	35,2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78,703	17,361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15,241,590	457,248
기반시설	218,432	6,553
수질개선관리	2,375,366	71,261
농업발전기금	2,816,000	84,48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06,76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